

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19-2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9년 1월 일

제 출 자 : 강서구청장

1. 의결주문

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양성평등사업 추진 단체 지원 기준을 개선하여 폭 넓은 사업 추진으로 양성평등 실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상위법령 제명 변경에 따라 인용 조문 및 명칭 정비

1) 성별영향분석평가 → 성별영향평가

나. 재정 지원 가능 단체 범위 조정

1) 관내 소재 단체 → 강서구민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단체

다. 법제처의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따라 조문 정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 「성별영향평가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2) 「양성평등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기관 없음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 (2018. 12. 12. ~2019. 1. 2.) : 의견없음

2)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
4) 성별영향평가 : 제외 대상

5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, 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」”을 “, 「성별영향평가법」”으로 한다.

제3조제2호 중 ““성별영향분석평가”란 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」 제2조제1호”를 ““성별영향평가”란 「성별영향평가법」 제2조제1호”로, “분석·평가하여”를 “평가하여”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때”를 “경우”로 한다.

제12조제3항 단서 중 “긴급을 요하거나”를 “긴급하거나”로, “경우에는”을 “경우는”으로 한다.

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때”를 “경우”로 한다.

제14조제2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16조 중 “관하여 필요”를 “필요”로 한다.

제21조제2항제7호 중 “「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3호”를 “「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3호”로 한다.

제28조 중 “관내 소재 여성단체,”를 “여성단체,”로, “하는 사업 또는 활동”을 “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”으로 한다.

제32조 제목 “(성별영향분석평가)”를 “(성별영향평가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」 제5조”를 “「성별영향평가법」 제5조”로, “성별영향분석평가(이하 “분석평가”라 한다)”를 “성별영향평가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분석평가를 함에 있어 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」 제2조”를 “성별영향평가를 할 때 「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」 제2조”로, “분석평가”를 “성별영향평가”로, “분석평가서”를 “성별영향평가서”로, “분석평가”를 “성별영향평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」 제9조에 따라 분석평가”를 “「성별영향평가법」 제9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」 제14조”를 “「성별영향평가법」 제14조”로, “분석평가책임관”을 “성별영향평가책임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분석평가”를 각각 “성별영향평가”로 한다.

제33조 제목 “(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)”을 “(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」 제13조의2에 따라 분석평가”를 “「성별영향평가법」 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평가”로, “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”를 “성별영향평가위원회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“분석평가”를 각각 “성별영향평가”로 한다.

제34조제2항제1호 중 “분석평가”를 “성별영향평가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“성별영향분석평가”를 “성별영향평가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분석평가”를 “성별영향평가”로 한다.

제45조제1항 중 “때”를 “경우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수립) ① (생략)

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2조(회의) ①·② (생략)

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·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④ ~ ⑥ (생략)

제13조(위원의 위촉 해제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.

1. ~ 4. (생략)

제14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 ① (생략)

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

수립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 경우-----

-----.

제12조(회의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 . ----- 긴급하거나

----- 경우는 -----.

④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13조(위원의 위촉 해제) -----

경우-----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제14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해당 -----

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.

③ (생략)

제16조(운영세칙)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21조(일·가정 양립 지원) ① (생략)

② 구청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1. ~ 6. (생략)

7. 「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족 친화제도의 확산

8. (생략)

제28조(단체의 지원) 구청장은 관내 소재 여성단체,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가 양성평등의 구현 및 여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,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이나 제38조에 따른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6조(운영세칙) -----
----- 필요-----

-----.

제21조(일·가정 양립 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.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7. 「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-----
--

8. (현행과 같음)

제28조(단체의 지원) -----연
성단체, -----

-----구민을 대상으로
하는 활동-----

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을 분석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.

⑤ 구청장은 분석평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제33조(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) ① 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」 제13조의2에 따라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(이하 “평가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한다.

1. 대상 정책의 선정 등 분석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
2.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
3. 4. (생략)

제34조(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)

- ① (생략)
-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양성평등 정책업무

성별영향평가책임관-----

⑤ ----- 성별영향평가-----

----- 성별영향평가 -----

제33조(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

및 기능) ① 「성별영향평가법」

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평

가 -----

----- 성별영향

평가위원회-----

② -----

1. ----- 성별영

향평가 -----

2. 성별영향평가 -----

3. 4. (현행과 같음)

제34조(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)

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

1. 당연직 위원 : 분석평가 업무 담당 과장, 성인지 예산 업무 담당 과장

2. 위촉직 위원 :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

가. (생략)

나.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③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분석평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.

④ (생략)

제45조(회의)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
②·③ (생략)

-----.

1. ----- 성별영향평가 -----

2. -----

가. (현행과 같음)

나. 성별영향평가 -----

-

③ -----

-- 성별영향평가 -----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45조(회의) ① -----

- 경우에 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
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본 의안의 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및 명칭을
정비하고 재정 지원 가능 단체 범위를 조정하는 것으로 별도로
발생하는 비용이 없어 비용추계서를 생략하고자 함.

4. 작성자

성 명	생활복지국 여성가족과장 이 수 연 (담당 : 행정7급 김 화 옥)
연락처	02-2600-6762

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

-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

□ 개정사유

-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양성평등사업 추진 단체 지원 기준을 개선하여 폭 넓은 사업 추진으로 양성평등 실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상위법령 제명 변경에 따라 인용 조문 및 명칭 정비
- 재정 지원 가능 단체 범위 조정
- 법제처의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따라 조문 정비

□ 검토의견

- 동 개정안은 상위법령 제명이 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」에서 「성별영향평가법」으로 변경되어 인용 조문과 해당 용어를 변경하고, 재정 지원 가능한 단체의 기준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
- 「행정규제기본법」 제2조 제1항에 따른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.

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

평가번호	2018-45				
자치법규명	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				
평가담당부서	감사담당관	직 급	행정7급	성 명	김현봉
입안주무부서	여성가족과	통보(조치)일		2018. 12. 17.	
관련조문		검토결과		조치사항	
개정안 전부		원안 동의		-	

서울특별시 강서구 성별영향평가 체크리스트 (법령)

법령명	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			
구분	제정() 개정(✓)				
형식	법률() 대통령령() 총리령() 부령() 조례(✓) 규칙()				
소관 부서	부서장	부서명	여성가족과	성명	이수연
				전화번호	02-2600-6750
	담당자	부서명	여성가족과	성명	김화옥
				전화번호	02-2600-6762
입법 일정 (예정)	관계기관 협의	2018-11-26 ~ 2018-12-11 (15 일간)			
	입법예고	2018-12-12 ~ 2019-01-02 (21 일간)			
	법제담당 등	2018-12-21 ~ 2018-12-21 (0 일간)			
붙임 자료	1. 법령(안)(신·구 조문 비교표 포함)				

구 분		해당 여부	주요 내용
작성 제외 법령	<input type="checkbox"/>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·관리에 관한 법령 - 예) 기구, 직제, 기록물, 물품, 수당, 감사, 문서 및 관인, 신분증, 기록물에 관한 법령, 수수료 징수, 민원사무 처리기간 등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아니오	
	<input type="checkbox"/> 벌금,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법령 - 예) 벌금, 과태료 등의 상하한선 규정,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등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아니오	
	<input type="checkbox"/>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, 전시 관련 법령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아니오	
	<input type="checkbox"/> 대통령 긴급명령에 의해 제·개정되는 법령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아니오	
	<input type="checkbox"/> 국호·국기·연호, 전례, 국경(정부기념)일 의전에 관한 법령 - 예)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, 국경일에 관한 법률 등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아니오	
	<input type="checkbox"/> 행정절차, 소송절차, 재판에 관한 법령 - 예) 과태료 처분 불복 관련 이의절차 조항, 과태료 재판 관련, 체납처분 조항 등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아니오	
	<input type="checkbox"/> 법령시행일, 효력에 관한 법령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아니오	
	<input type="checkbox"/>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조례나 규칙, 제명 및 문구 등 단순 변경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	상위법령 제명 변경에 따라 인용 조문 및 명칭 정비 (성별영향분석평가→성별영향평가)
	<input type="checkbox"/>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법령 - 예) 여성농어업인육성법,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등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	양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
	<input type="checkbox"/>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대상(법제처)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	법제처의 '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'에 맞게 조문 정비
<input type="checkbox"/> 일몰조항만 개정되는 법령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아니오		

제출일 : 2018년 12월 21일 제출일 : 2018년 12월 21일

* 법제처 심사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(당일~당일(0일)로 적용 가능)

** 지방자치단체는 법제담당 등 기관특성에 맞게 수정 가능